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2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 247

나.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2. 18. 양산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12. 18.

라. 상정일자

- 제17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12.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 정천모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행정기구 개편, 상위법 개정·시행 및 신규사업 실시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필요한 인력배치를 위해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정원 조정(안 제2조)

◦ 총정원 : 1,345명(변동없음)

- 집행기관 : 1,320명 → 1,319명(감1)

- 의회사무기구 : 25명 → 26명(증1)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별표3)

◦ 일반직 : 1,310명 → 1,313명(증3)

- 5급 : 66명 → 70명(증4)

- 6급 이하 : 1,230명 → 1,229명(감1)

◦ 연구직 : 11명 → 10명(감1)

◦ 지도직 : 21명 → 19명(감2)

※ 5급 일반직-연구·지도직 복수직렬은 일반직 정원으로 책정토록 하여 정원 조정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우현주)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4조, 제30조

나. 제정안 개요

○ 행정기구 개편, 상위법 개정·시행 및 신규사업 실시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필요한 인력배치를 위해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다. 주요 변경사항

○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정원조정(안 제2조)

구분	현행	개편	증감
총정원	1,345명	1,345명	-
집행기관	1,320명	1,319명	감1
의회사무국	25명	26명	증1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별표3)

구분		현행	개편	증감
일반직	계	1,310명	1,313명	증3
	5급	66명*	70명**	증4
	6급 이하	1,230명	1,229명	감1
연구직		11명	10명	감1
지도직		21명	19명	감2

* 66명(본청 35, 의회사무국 2, 출장소 5, 직속기관 5, 사업소 5, 읍면동 14)

** 70명(본청 36, 의회사무국 2, 출장소 5, 직속기관 7, 사업소 6, 읍면동 14)

라.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개편 안에 따라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 간 정원을 조정하고 집행기관 내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정원 총수는 1,345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간 1명에 대한 인원 증감이 있음. 평생교육담당관이 폐지되고 수질관리과와 공공시설과가 신설되면서 일반직 5급 정원이 1명 늘어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지도관 2명과 연구관 1명의 정원을 일반직 5급 정원으로 정비·책정함으로써 일반직 5급 정원은 총 4명 증가됨. 또한, 시행규칙 안에 따라 응상출장소의 정원은 9명을 감하여 88명으로 변경됐으며 양산시 총정원 대비 비율이 6.5%임.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되거나 형식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부서의 신설 및 통폐합과 업무이관은 시민들에게는 혼란을, 집행부에는 행·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향후 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내실 있는 조직 관리에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참고 기준인건비 현황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준인건비 산정기준

○ 전년도 기준인력 + 소방인력 + 국정현안수요 + 행정수요 지표* 등을 반영한 지역현안수요 + 효율적 조직관리 인센티브

<10개 행정수요 지표>

- ① 인구 ② 면적 ③ 주간 인구 ④ 65세 이상 인구 ⑤ 사업체수 ⑥ 자동차수 ⑦ 장애인수 ⑧ 법정민원 수 ⑨ 외국인 인구 ⑩ 농경지면적 및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자치단체별 충원율 등 반영

기준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기준인건비		집행액		비고
	산 정 액	전년대비 증감			
2017	83,991,833	4,951,214	81,508,102	97.0%	
2018	89,934,528	5,942,695	87,963,995	97.8%	
2019	94,994,537	5,060,009	95,890,826	100.9%	결산반영액*
2020	102,992,873	7,998,336	93,680,722	90.96%	11.30.기준
2021	106,665,375	3,672,502	111,625,330	104.7%	본예산(안)

※ 결산반영액 : 초과허용액(공무직근로자 퇴직금 결산액) 제외한 인건비 결산액

2021년 당초예산 인건비 편성액 : 1,116억원

-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계상
- 인건비 통계목 : 101-01, 102-02, 101-03, 204-02, 303-02, 304-01, 304-02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7
----------	-----

제출연월일 : 2020. 12. 18.

제 출 자 : 양산시장

1. 제안이유

행정기구 개편, 상위법 개정·시행 및 신규사업 실시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필요한 인력배치를 위해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정원 조정(안 제2조)

- 총정원 : 1,345명(변동없음)
 - 집행기관 : 1,320명 → 1,319명(감1)
 - 의회사무기구 : 25명 → 26명(증1)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별표3)

- 일반직 : 1,310명 → 1,313명(증3)
 - 5급 : 66명 → 70명(증4)
 - 6급 이하 : 1,230명 → 1,229명(감1)
- 연구직 : 11명 → 10명(감1)
- 지도직 : 21명 → 19명(감2)

※ 5급 일반직-연구·지도직 복수직렬은 일반직 정원으로 책정토록 하여 정원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4조, 제30조

나. 기 타

- 1)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4) 입법예고(2020. 12. 7. ~ 12. 14.) 결과 : 미반영
- 5) 비용추계서 : 불임 참고

양산시조례 제 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320명”을 “1,31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5명”을 “2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1,345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313	-					
3급	1	1					
4급	12	6	1	1	2	1	1
5급	70	36	2	5	7	6	14
6급이하 소계	1,229	-					
전문경력관 소계	1	-					
별정직 계	2	-					
5급	1	1	-	-	-	-	-
6급상당 이하 소계	1	-					
연구직 계	10	-					
연구관	0					0	
연구사	10	-					
지도직 계	19						
지도관	0				0		
지도사	19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양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345명이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
1. 집행기관의 정원 : <u>1,320명</u>	1. ----- <u>1,319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25명</u>	2. ----- <u>26명</u>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1,345	-						총계	1,345	-					
정무직 계	1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310	-						일반직 계	1,313	-					
3급	1	1						3급	1	1					
4급	12	6	1	1	2	1	1	4급	12	6	1	1	2	1	1
5급	66	35	2	5	5	5	14	5급	70	36	2	5	7	6	14
6급이하 소계	1,230	-						6급이하 소계	1,229	-					
전문경력관 소계	1	-						전문경력관 소계	1	-					
별정직 계	2	-						별정직 계	2	-					
5급	1	1	-	-	-	-	-	5급	1	1	-	-	-	-	-
6급상당 이하 소계	1	-						6급상당 이하 소계	1	-					
연구직 계	11	-						연구직 계	10	-					
연구관	1					1		연구관	0					0	
연구사	10	-						연구사	10	-					
지도직 계	21	-						지도직 계	19	-					
지도관	2				2			지도관	0				0		
지도사	19	-						지도사	19	-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발생요인 :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나. 관련조문 :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정원조정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일반직									전문 경력관	별 정직	연 구직	지 도직	정 무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	1,345	1,310	1	12	66	297	352	360	221	1	2	11	21	1	
개정안	1,345	1,313	1	12	70	298	354	358	219	1	2	10	19	1	
증 감	0	3	-	-	4	1	2	△2	△2	-	-	△1	△2	-	

나.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인건비 추가 소요액	129	132	135	138	141	675

※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 2% 적용

3. 부대의견

정원총수 변동 없이 직급변동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액의 대략적인 추계로 실제 운용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작성자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연 재 환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총계		129	132	135	138	141	675
의존 재원	국고보조	해당없음					
자체 수입	소계	129	132	135	138	141	675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체수입

3. 부대의견

정원총수 변동 없이 직급변동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액의 대략적인 추계로 실제 운용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작성자 행정지원국 행정과장 연 재 환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⑧ 농업기술과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 부장과 과장 · 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 · 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3. 직속기관

○ 지방농촌진흥기구(제16조제8항 관련)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원장	국장 또는 부장	과장		특화작목 시험장장	소장	과장· 담당관
		지도사업 분야	시험연구 사업분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농업연구관 · 농촌지도 관	지방농촌지 도관	지방농업연 구관	지방농업연 구관	지방농촌지 도관	지방농촌지 도관

비고

1.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의 소장과 과장·담당관에 해당하는 정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시나 군 본청의 농업행정과 관련된 과의 기능과 통·폐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해당 지도직공무원의 상당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인구가 10만명 이상인 시·군의 경우에는 소장은 4급, 과장·담당관은 5급을 말하며,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군의 경우에는 5급을 말한다)을 복수직으로 책정할 수 있다.
2. 위 표 중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 농업연구관을 둘 수 있다.
3. 위 표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표시한다.